

입법예고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3.



농림축산식품부
농기자재정책팀

1. 개정이유

신규 개발되는 수출입식물검역용 농약을 신속히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·장비의 수량, 규격 등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향후 신규 약제 개발 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 및 장비의 수량·규격·세부용도 등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함(안 별표 1의2 개정)
 - 시행규칙에는 시설 및 장비 목록을 규정하고, 시설 및 장비별 수량·규격·세부용도 등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함
- 나.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,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범위를 ‘해당 시험 분야’로 한정(안 별표 3의4 개정)
 - 허위·고의중대과실·업무정지명령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되,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범위를 ‘해당 시험 분야’로 한정함
- 다. 국내 화학물질 분류·표시기준 통합표준 제정('19.6월)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 개선(안 별표 3의6 개정)
 -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5가지를 4가지로, 급성 수서환경 유해성 3가지를 1가지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비 고
1. 가스농도 측정기	○ 사용약종별 구비
2. 미량 가스검지기	○ 사용약종별 구비
○ 가스채취기 및 검지관	
○ 가스누출 검지기	
○ 염색반응형 가스검지기	
3. 방독마스크	○ 사용약종별 구비
4. 산소농도 측정기	
5. 탄산가스농도 측정기	
6. 공기호흡기	
7. 산소호흡기	
8. 송배풍기	
9. 휴대형발전기	○ 송배풍기 가동용
10. 투약용기 화기	
11. 미량투약기	
12. 저울(전자저울을 포함한다)	
13. 검역용약제 보관창고	
14. 무선기	○ 소독현장용
15. 최고최저온도계 및 곡온계	

16. 밀폐용 천막	
17. 소화기	
18. 구급약품	
19. HCN 보관용냉장고	○ 청산소독에 한정함
20. HCN 개관기	○ 청산소독에 한정함
21. HCN 보호의	○ 청산소독에 한정함
22. HCN 운반용 용기	○ 청산소독에 한정함
23.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(MB)	○ 목재포장재 소독에 한정함

비고

1.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천막을 면제할 수 있다.
2. 사용 약제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수량, 규격, 세부용도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3의4 제1호나목 후단 중 “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”을 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	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	
1) 시험성적서				
2)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				
3)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				

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				
다.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17조의5 제1항제3호	해당 시험 분야 업무정지 1개월	해당 시험 분야 업무정지 3개월	해당 시험 분야 지정취소
라.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 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 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 적이 없는 경우	법 제17조의5 제1항제4호	경고	해당 시험 분야 지정취소	
마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 무를 한 경우	법 제17조의5 제1항제5호	지정취소		

비고 :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시험분야는 법 제17조의4,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이화학적분석, 약효 및 약해, 잔류성,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, 환경생물독성을 말한다.

별표 3의6 제1호가목 중 “5가지”를 “4가지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“3가지”를 “1가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
[별표 1의2]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(제6조의2 관련) 1. 인력(생략) 2. 시설 및 장비				[별표 1의2]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(제6조의2 관련) 1. 인력(생략) 2. 시설 및 장비	
시설	수량	규격	비고	구분	비고
1. 사용약종별 (MB, PH ₃ , Ethyl formate)가스농도측정기				1. 가스농도 측정기	○사용약종별 구비
○가스검지기	3대 이상	○간접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,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~100mg/ℓ 이상, 최소측정단위 5mg/ℓ 이내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	2. 미량 가스검지기	○사용약종별 구비
	1대 이상	○간접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~30mg/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2mg/ℓ 이내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	○가스채취기 및 검지관	
	1대 이상 (Ethyl formate 소독에 한함)	○적외선 측정방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~80mg/g/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0.3mg/ℓ (0.01%)이내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	○가스누출 검지기	
2. 사용약종별 (MB, PH ₃ , HCN)미량 가스검지기				○염색반응형 가스검지기	○사용약종별 구비
○가스채취기 및 검지관	5대 이상	○채취량 100ml 이상 ○허용(관리)농도에서 변색이 될 것 ○HCN 검지관의 측정범위는 0 ~ 3,000ppm	청산소독에 한함	3. 방독마스크	
				4. 산소농도 측정기	
				5. 탄산가스농도 측정기	
				6. 공기호흡기	
				7. 산소호흡기	
				8. 송배풍기	○송배풍기 가동용
				9. 휴대형발전기	
				10. 투약용기화기	
				11. 미량투약기	
				12. 저울(전자저울을 포함한다)	
				13. 검역용약제 보관창고	
				14. 무선기	○소독현장용

○가스누출 검지기	5대 이상	이상 ○열선형반도체식 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 진 것, 3초이내 응답, 경보기능 부착	
○염색반응 형 가스검지 기 (MB용)	5대 이상	○불꽃식 ○약종별 허용농 도 이하의 가스 검지가 가능한 것	
3. 방독마스크	10개 이 상	○전면형 ○유효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것	○방독마스크용 흡 수관은 약제별(MB, PH3, HCN 등)로 각각 10개 이상 확 보할 것. 다만, 사용 하지 않는 약제의 흡수관은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
	3개 이상	○반면형 ○유효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것	○방독마스크용 흡 수관은 약제별(MB, PH3, HCN 등)로 각각 3개 이상 확보 할 것. 다만, 사용하 지 않는 약제의 흡 수관은 구비하지 않 을 수 있음 ○약제의 노출허용 농도(TLV-TWA) 이하 작업에서만 사 용할 것
4. 산소농도 측정기			
○휴대형 및 투입 형	각 1대 이상	○휴대용은 경보 장치 부착 ○투입형은 케이 블 5m 이상 ○측정범위 0~2 5% ○지시정도 ±0. 7% 이하 ○응답속도 20초 이내 접촉연소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 진 것 경보기능 부착, 소 형·경량, 측정 범위 0~1% 이상 ○15분 이상 공기 공급이 가능 한 것	
5. 탄산가스농 도 측정기	1대 이상		
6. 공기호흡 기	2대 이상		

15. 최고최저온도계 및 곡온계 16. 밀폐용 천막 17. 소화기 18. 구급약품 19. HCN 보관용냉장고 20. HCN 개관기 21. HCN 보호의 22. HCN 운반용 용기 23.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(MB)	○청산소독에 한정함 ○청산소독에 한정함 ○청산소독에 한정함 ○청산소독에 한정함 ○목재포장재 소독에 한정함
--	---

비고

1.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
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
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천막을
면제할 수 있다.

2. 사용 약제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수량,
규격, 세부용도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
고시한다.

7. 산소호흡기	1대 이상			
8. 송배풍기	10대 이상	○송풍능력 50m³/분 이상		
9. 휴대형발전기	5대 이상	○송풍능력 10~50m³/분 이상	○송배풍기 가동용	
10. 투약용기화기	1대 이상			
11. 미량투약기	5대 이상			
12. 저울	2대 이상	○측정기본단위가 1ml 이하인 것		
	1대 이상	○첫달림 10g 이내		
		○끝달림 50kg 이상		
	3대 이상	○첫달림 50g 이내		
		○끝달림 100kg 이상		
	1대 이상	○첫달림 500g 이내		
		○끝달림 100kg 이상		
13. 전자저울	1대 이상	○첫달림 0.1g 이내		
		○끝달림 1.2kg 이상		
		○HCN 훈증제 보관창고는 사람의 출입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		
14. 검역용 약제 보관창고	20m² 이상	○2중문에 각각 잠금장치가 되고, 차광시설 및 환기구		
15. 무선기	1조 이상	구가 있을 것	○소독현장용	
16. 최고최저 온도계 및 곡온계	각 5대 이상	○3명 이상 교신이 가능할 것		
17. 밀폐용 천막	7,000m² 이상	○PE·PVC 또는 고무로 코팅된 두께 0.2mm 이상인 것으로 제작되어 습기 및 공기가 통하지 아니할 것		
18. 소화기	각 3대 이상	○ABC 또는 하론식		
19. 구급약품	2조 이상			

비고: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품 방제업을 하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천막을 면제할 수 있다.

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
세부기준(제22조의6 관련)

가. (생략)

2. 개별기준

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
세부기준(제22조의6 관련)

가. (생략)

2. 개별기준

- 10 -

에 대한 시험업무 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 속하여 3년 이 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				
마. (생 략)				

[별표 3의6]

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
구분(제24조의2제2항 관련)

1. 원제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: 다
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.

가. "급성독성 물질"은 입이나 피부
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
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
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
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
말하며, 입이나 피부를 통한 투여
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5가
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.

나. ~ 카. (생 략)

2. 원제의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 : 다음
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.

가. "급성 환경유해성 물질"은 단기간
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서
생물과 수서생태계에 유해한 영향
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, 3가지의
급성 구분으로 분류한다.

나. ~ 다. (생 략)

3. (생 략)

에 대한 시험업 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 속하여 3년 이 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				
마. (생 략)				

비고 :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
되는 시험분야는 법 제17조의4, 시행규칙 제22
조의3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이화학적
분석, 약효 및 약해, 잔류성, 사람과 가축에
대한 독성, 환경생물독성을 말한다.

[별표 3의6]

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
구분(제24조의2제2항 관련)

1. 원제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: 다
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.

가.

-----,
----- 4가지
-----.

나. ~ 카. (생 략)

2. 원제의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 : 다음
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.

가.

-----,
----- 1가지
-----.

나. ~ 다. (생 략)

3. (생 략)